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6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서삼석·박희승·임호선

윤준병 · 송옥주 · 복기왕

이병진 • 박수현 • 위성곤

문대림 · 김문수 · 안도걸

신영대 · 소병훈 · 이개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은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인 0.7명 대였으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연시켰으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은 복지·교육·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당면 과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 설 등).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제39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장관은 출산 및 노인 정책의 기획·종합, 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6조의 개정규정 에 규정된 사무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소속 공무

원으로 본다.

- ③ 이 법은 시행 당시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 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장관이 승계 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장 관의 행위 또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소속 공무원 또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정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소속 공무원 또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제26조(행정각부) ①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0.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	제39조(보건복지부) ①
부장관은 생활보호 · 자활지원	
・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	
육은 제외한다)· <u>노인·장애인</u>	<u>장애인</u>
・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	
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46조(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장관은
	출산 및 노인 정책의 기획・종
	합, 노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